

기업지배구조 헌장

전 문

주식회사 대한항공(이하 회사)은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로서, 최상의 서비스와 고객 만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하고자 한다.

이를 위해,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주주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며, 고객과 임직원,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고,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사회와 운영과 실질적인 감사기구를 통한 투명한 경영을 추구한다.

회사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이 고객과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, 나아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것임을 깊이 공감하는 바, 이에 “주식회사 대한항공 기업지배구조헌장”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.

제1장 주주

제 1조 [주주의 권리]

-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이익배당, 잔여재산 분배 참여,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.
-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.
-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,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,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, 주주총회 각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2조 [주주의 공평한 대우]

-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,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.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-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,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

관련법령을 준수한다.

- ③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, 그에 따른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하도록 노력한다.

제 3조 [주주의 책임]

- ① 주주는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,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.

제2장 이사회

제 4조 [이사회의 기능]

-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,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5조 [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]

- ① 이사회는 효과적인 토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이어야 하며,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.
- ②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며, 그 수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(3명 이상, 총 이사의 과반수)이어야 한다.
- ③ 이사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인사로 선임하고,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.

제 6조 [사외이사]

- ① 사외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하고,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.
- ②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과반이 포함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한다.
- ③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,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사외이사는 필요 시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.

제 7조 [이사회의 운영]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.
- ②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회의 권한과 책임,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한다.
- ③ 회사는 매 회의 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 내용을 유지·보관한다.
- ④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 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.
- ⑤ 이사는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 8조 [이사회 내 위원회]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적정 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한다.
- 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,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며,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제 9조 [이사의 의무와 책임]

-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- ② 이사는 직무수행으로 얻어진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,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.
- ③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- ④ 이사가 경영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이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.
- ⑤ 회사는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3장 감사기구

제 10조 [감사위원회]

-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되, 위원 중 1인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명문화된 규정을 근거로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 진행에 대한 적법성 검사, 회사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검사,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,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 등을 수행한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경영진, 재무 담당 임원,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⑤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에 대한 의사록과 감사에 관한 감사록을 작성한다.

제 11조 [외부감사인]

- ①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,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.
- ② 회사는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장 이해관계자

제 12조 [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및 참여]

- ① 회사는 고객과 임직원, 채권자, 협력사,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② 회사는 임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,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임직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.
- ③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.
- ④ 회사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

제 13조 [공시]

- 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 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한다.
- ② 회사는 정기 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.
- ③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,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.
- ④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춘다.
- ⑤ 회사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한다.

2019년 11월 7일

부칙

1. 이 헌장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.